

<b>투자위험등급 :</b> <b>1 등급</b> <b>[매우 높은 위험]</b>	<p>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p>
---	---

## 간이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한화 1 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에 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화 1 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한화 1 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3. 판매회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kr)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 2012년 3월 3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12년 4월 9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10 조좌까지 모집  
[모집(매출) 총액 : 10 조원]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 가능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한화자산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해당사항 없음

※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판매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 목차 CONTENTS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모집기간
3. 모집예정금액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6. 집합투자업자

###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 주요 투자대상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3. 수익구조
4. 주요 투자위험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6. 운용전문인력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2. 과세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IV. 요약 재무정보

# 간이투자설명서

## I 집합투자기구의 개요

###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명칭	한화 1 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A6350)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A-u2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i	종류 C-i2	종류 C-w
금융투자협회 펀드 코드	A6351	A9025	A6352	A6353	A6354	A6355	A6356	A6357	A6358	A6359

2.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별도의 모집기간 없이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조좌까지 모집(판매) 가능하며 1좌단위로 모집합니다. 다만, 모집(판매)기간이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모집예정금액까지 계속 모집(판매) 가능합니다.

주1)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2)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 4.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계약의 종료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은 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기간(저축만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주) 법령 또는 집합투자계약상 일정한 경우(예: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강제로 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될 수 있습니다.

### 5.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전환형(종류A-u2에 한함)

####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구분	주요내용
모투자신탁명	한화1조클럽증권 모투자신탁(주식)
주요 투자대상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합니다.
주요 투자전략	국내 기업 중 영업이익 1조원 이상 또는 향후 수년래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 선별된 핵심기업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률이 비교지수를 일관성 있게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투자 위험	주식가격 변동위험, 금리변동위험, 신용위험, 파생상품투자위험 등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환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 종류 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 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집합투자기구명	주요 투자전략
한화Value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 A-u2 수익증권	모투자신탁은 저평가된 주식 위주로 투자함으로써 시장대비 초과수익 달성을 추구합니다.
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모투자신탁은 국내 기업 중 영업이익 1조원 이상 또는 향후 수년래 영업이익 1조원 달성이 기대되는 종목들 중 선별된 핵심기업으로 주식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률이 비교지수를 일관성 있게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상장지수집합투자증권, 주가지수선물 등에 투자하여 KOSPI200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2.2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추구하고 적극적인 채권매매 등을 통해 추가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화글로벌리츠 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글로벌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지역별, 섹터별 자산배분을 통하여 이자소득과 자본차익을 포함하는 토탈리턴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화동남아시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모투자신탁은 리서치를 통하여 동남아시아국가 주식시장에 상장되거나 동남아시아 국가의 기업 주식 중에 저평가된 주식에 투자합니다.
한화차이나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모투자신탁은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으로 레버리지 효과(지렛대 효과)를 활용하여 HSCEI 지수에의 노출도를 1.5배 수준으로 유지하여 HSCEI 지수의 일일등락률의 양(陽)의 1.5배 수익률을 추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모투자신탁은 중장기적으로 투자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고자, 천연자원과 관련된 기업이 발행한 주식, DR 등에 주로 투자합니다.
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신흥국 시장(이머징마켓) 채권 또는 미국 고수익채권에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 라 한다)에 주로 투자하여 높은 이자수익과 자본이익으로 토탈리턴(Total Return)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전략으로 합니다.
한화인덱스free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국내 주식 및 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KOSPI200 구성종목, KOSPI200을 구성하는 기업이 발행한 우선주 및 주가지수선물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KOSPI200지수 수익률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유동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함으로써 단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 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집합투자업자 : 한화자산운용주식회사**

II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모투자신탁 수익증권	- 100%이하	-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은 한화 1 조클럽증권 모투자신탁(주식)을 수익증권을 말함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예치	- 10%이하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환매대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모투자신탁의 환매대금 지급 일정의 차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단기대출 : 법시행령제 83 조제 3 항의 금융기관에 대한 30 일 이내의 금전의 대여 - 금융기관 예치 : 만기 1 년 이내인 상품에 한함

※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한화1조클럽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투자대상	투자한도	투자대상자산 세부설명
주식	- 70%이상	- 주식은 법 제 4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및 법 제 4 조제 8 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 9 조제 15 항제 3 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을 말함
채권	- 30%이하	- 채권은 법 제 4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을 말함.
어음	- 30%이하	- 어음은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제 4 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 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을 말함
집합투자증권등	- 30%이하	- 집합투자증권등이란 법 제 110 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 9 조제 21 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을 말함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	- 파생상품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이하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은 법 제 5 조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채권이나 주식·채권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을 말함

\*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주로 헷지 목적으로 투자하나 상황에 따라 헷지외의 목적으로 투자(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의 10%이내 한도) 할 수 있습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가.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며, 수익률이 비교지수를 일관성 있게 상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나. 비교지수 : KOSPI 95%, 매경BP CD 5%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이 투자신탁은 한화1조클럽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주로 투자하고 나머지 자산은 단기대출 및 금융기관 예치 등의 자산으로 운용합니다.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 운용전략

- “1조클럽” 기업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1조클럽”이란 다음의 종목군을 말합니다.
  - 글로벌 선도기업 : 현재 영업이익 1조원 이상 기업  
⇒ 주가의 재평가(re-rating)
  - Again 1조클럽 : 영업이익 1조원으로 복귀가 예상되는 기업  
⇒ 실적개선(Turn-Around)
  - Dreaming 1조클럽 : 향후 수년래 영업이익 1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 주가 상향조정(Level-up)
  - 동반성장 기업: 1조클럽 기업들과 동반 성장하는 강소(強小)기업  
⇒ 대기업들이 1조 클럽으로 발전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있는 소재/부품 기업이 필수

□ 포트폴리오 구성

- “1조클럽” 주식 중 선별된 유망종목으로 압축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 종목선정 기준 (4S)
  - 1) 지속적 성장(Sustainable Growth)
    - ✓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
    - ✓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거나, 구조적인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기업은 과감히 배제
  - 2) 안정적인 수익(Stable Earnings)
    - ✓ 실적 추정에 대한 가시성이 높은 기업에 투자
    - ✓ 불확실한 변수에 대한 노출도가 큰 기업에 대해서는 경계
  - 3) 구조적인 개선(Structural Improv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환경 변화나 개별 기업의 Restructuring과 같이 구조적인 개선 이슈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격적인 투자</li> </ul> <p>4) 우수한 경영진(Smart Manage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한 경영진을 갖춘 기업에 투자</li> <li>✓ 비윤리적이거나, 부적절한 경영진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li> </ul>
--

※ 상기 투자전략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위험관리

- 위험관리체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회사 전체의 위험 정책을 수립·변경하며 자산별, 펀드별 투자 가이드라인을 설정합니다. 위험관리부서는 자산별, 펀드별 거래한도 및 투자한도, 또는 손실한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핵심 위험요인을 정의하여 포트폴리오 위험을 측정·관리합니다. 정기적으로 운용부서 및 운용본부장에게 포트폴리오 위험, 기준지수 대비 성과, 요인분석 및 추적오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이사 이하 관계자들이 사후 조치 및 재발방지대책을 결정합니다.

- 주식 위험관리 : 편입비, 섹터별 active weight, 포트폴리오 베타를 통해 포트폴리오 위험을 관리하며 기준지수 대비 추적오차를 점검하여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3.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주식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따라서 투자한 국내 주식의 가격변동에 따라 투자자의 수익률이 주로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금손실 위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식가격변동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므로 주식시장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주식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
금리변동위험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채권가격 하락에 의한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증권 등의 발행회사 또는 단기금융상품 거래상대방의 경영상태가 악화되거나 신용도하락, 채무불이행, 부도 등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해당 증권 및 단기금융상품의 가치가 급격히 하락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 옵션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2)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이 상품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이자율 등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주)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및 원본손실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 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100%이하 투자하는 모두자신탁은 신탁재산의 70%이상을 변동성이 높은 주식에 투자하므로 투자위험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수익을 추구하고 그에 따른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장기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6. 운용전문인력

가.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2년 03월 31일)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해진	1966	본부장	55개	15,621억	-히토츠바시대학 상과대학원(경영전략) -삼성생명 기업분석(6년) -새마을금고연합회 주식운용(3년 2개월) -미래에셋자산운용 Wrap운용실장(1년 1개월) -하나대투증권 주식운용부장(2년 1개월) -공무원연금공단 주식총괄실장(2년 8개월) -한화자산운용(2012.4~현재)	주식운용 본부

주)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팀제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주식운용본부장)입니다.

나. 최근 3년간 책임운용전문인력 변동사항

변경일	변경전	변경후
2012. 04.09	박용명	이해진

[모집합투자기구의 책임운용전문인력 현황]

(기준일: 2012년 03월 31일)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해진	1966	본부장	54개	15,620억	-히토츠바시대학 상과대학원(경영전략) -삼성생명 기업분석(6년) -새마을금고연합회 주식운용(3년 2개월) -미래에셋자산운용 Wrap운용실장(1년 1개월) -하나대투증권 주식운용부장(2년 1개월) -공무원연금공단 주식총괄실장(2년 8개월) -한화자산운용(2012.4~현재)	주식운용 본부

주)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팀제로 운용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 (주식운용본부장)입니다.

7. 투자실적 추이(세전 기준)

- 신규로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III**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 이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는 판매보수 및 수수료와 관련하여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명칭 (클래스)	가입자격	수수료율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전환수수료
A	제한 없음	1.0% 이하	없음	- 30일미만: 이익금의 70% - 30일 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30%	-
A-u2	제한 없음 종류A-u2 수익증권간 전환권	1.0% 이하	없음	30일미만: 이익금의 70%	-
C1	제한 없음	없음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C2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 년 되는 날 종류 C2	없음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으로 전환				
C3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없음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C4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되는 날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없음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C-e	판매회사의 인터넷 बैं킹 통해 가입	없음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C-i	50억원 이상	없음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C-i2	100억원 이상	없음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C-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	없음	없음	90일미만 이익금의 70%	-
부과기준		납입금액	-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

주1) 선취판매수수료율은 납입금액의 1.0% 이하 범위에서 판매회사가 정하며, 판매회사별로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별 선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선취판매수수료율을 달리 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적용 1일 전까지 집합투자업자 및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 (클래스)	지급비율(연간, %)						총 보수·비용	증권 거래 비용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 회사 보수	기타 비용			
A	0.65	0.85	0.03	0.017	-		1.547	-
A-u2	0.65	0.87	0.03	0.017	-		1.567	-
C1	0.65	1.5	0.03	0.017	-		2.197	-
C2	0.65	1.25	0.03	0.017	-		1.947	-
C3	0.65	0.99	0.03	0.017	-		1.687	-
C4	0.65	0.90	0.03	0.017	-		1.597	-
C-e	0.65	0.90	0.03	0.017	-		1.597	-
C-i	0.65	0.15	0.03	0.017	-		0.847	-
C-i2	0.65	0.03	0.03	0.017	-		0.727	-
C-w	0.65	0.0	0.03	0.017	-		0.697	-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매3개월 후급	사유발생시 (주1 참조)	-	-	사유발생시 (주2 참조)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에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으로서 이 투자신탁의 기타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기타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 2) 이 투자신탁의 증권거래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다른 투자신탁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주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기재가 생략된 기타비용과 증권거래비용은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이 경과하거나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시할 예정입니다.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천원)

종류	1년	3년	5년	10년
종류 A	259	600	976	2,094
종류 A-u2	261	606	987	2,120
종류 C1	225	710	1,244	2,832
종류 C-e	164	516	905	2,059
종류 C-i	87	274	480	1,092
종류 C-i2	75	235	412	937
종류 C-w	71	225	395	899

주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1.0%) 및 모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 및 기타비용을 포함한 합성 총보수 및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2) 종류C1의 보수·비용은 투자자가 최초로 종류C1 수익증권에 가입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종류C2, 종류C3, 종류C4 수익증권으로 전환하여 부담하게 되는 보수·비용의 예시입니다.

주3) 종류A와 종류C1 수익증권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1년 6개월입니다. 단, 종류 C1 수익증권은 최초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에 종류 C2수익증권으로 전환이 됩니다.

## 2. 과세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채권의 매매·평가차익,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 (1) 기준가격 산정

기준가격 산정주기/공시시기	매일
기준가격 공시방법	전자공시

기준가격 공시장소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hanwhafund.co.kr">www.hanwhafund.co.kr</a> ) · 판매회사 · 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www.kofia.or.kr</a> ) 홈페이지, 판매회사 각 영업점
종류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각 종류 수익증권별로 판매보수가 상이하므로 기준가격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1) 공휴일, 국경일 등 집합투자업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 날에는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가. 매입**

- 매입방법 :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3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 (나) **오후 3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나. 환매**

- 환매방법 :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가)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나) **오후 3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환매수수료

구 분	수수료율										비고 (지급 시기)
	종류 A	종류 A-u2	종류 C1	종류 C2	종류 C3	종류 C4	종류 C-e	종류 C-i	종류 C-i2	종류 C-w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3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미만: 이익금의 70%	30일미만: 이익금의 70%	90일미만 이익금의 70%								환매시

- 단,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 수익증권 보유기간이 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합니다
- 판매회사는 환매수수료 및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합니다.

**다. 종류 수익증권간 전환**

- (1) 판매회사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종류 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이하 "최초매수일"이라 합니다.)**로부터 경과기간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수익증권으로의 전환처리를 합니다. 단,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종류 C1 수익증권을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 종류 C2 수익증권을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종류 C3 수익증권을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 상기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 상기 각 해당 전환일에 자동 전환처리하며,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합니다.

※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합니다.

< 예외 >

예외1

수익증권의 매입요청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매입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매입절차가 진행 중인 당해 수익증권의 매입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외 2.

수익자의 (일부)환매청구에 따라 해당 수익증권의 (일부)환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환하지 아니하고, 당해 (일부)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예외 3.

전환일 전일이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일(결산일)인 경우, 예정 전환일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할 수 있습니다.

\* 판매회사는 위 전환을 적용함에 있어 그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따라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전환

**※유의사항**

- ▶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가 설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해지된 경우 당해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이 투자신탁의 판매회사는 전환대상 투자신탁 중 일부를 판매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해당 판매회사에 전환을 원하는 투자신탁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신 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 전환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투자신탁의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류A-u2 수익증권의 타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의 전환**

이 투자신탁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과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투자자에게 부여된 전환형 투자신탁입니다. 아래의 전환대상 투자신탁 상호간에 어느 때라도 투자대상 투자신탁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전환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전환에 따른 별도의 수수료도 없습니다.

수익자가 투자신탁의 전환을 위하여 수익증권을 환매청구하는 경우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른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에서 이 투자신탁의 종류A-u2 수익증권으로 전환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계약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전환에 따라 취득한 수익증권 매입일을 기준으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합니다.

**▶ 전환대상 투자신탁 수익증권**

- 한화Value포커스증권 자투자신탁1호(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1조클럽증권 자투자신탁(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2.2배레버리지인덱스증권투자신탁(주식-파생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정통액티브증권투자신탁1호(채권)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리츠 부동산투자신탁1호(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동남아시아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차이내H스피드업1.5배증권 자투자신탁(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글로벌천연자원증권전환형 자투자신탁H(주식)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스트래티직인컴증권투자신탁1호(채권-재간접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인덱스free증권투자신탁1호(주식-파생형) 종류A-u2 수익증권
- 한화개인MMF 1호 종류A-u2 수익증권

**IV**

**요약 재무정보**

- 신규로 설정되는 집합투자기구이므로 해당사항 없습니다.